2023년 요양원 이용요금 안내

요양원 비용은 80%를 공단이 지원하고 20%가 본인부담액입니다.

식비, 간식, 상급 침실 등 비급여는 100% 본인부담액입니다.

등급	급여비용 (1일)	급여비용 (30일)	본인부담금(월)①			비급여 (월)② (식대, 간식) 예시금액	(월)총계③
			일반대상자 (20%)	감경자 (12%)	감경자 (8%)		**일반20%**
1등급	78,250	2,347,500	**469,500**	281,700	187,800	**270,000**	**739,500**
2등급	72,600	2,178,000	**435,600**	261,360	174,240	**270,000**	**705,600**
3,4,5등급	66,950	2,008,500	**401,700**	241,020	160,680	**270,000**	**671,700**

※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**예시 금액**입니다.

※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~12%이며,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는 식비 포함한 전액 무료입니다.

※ 4, 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 비용 산정 (30일 기준)

월 이용 요금③ = 본인부담금(월)① + 비급여②

노인요양시설(요양원)

(단위 : 1일, 원)

등급	'22년 수가	'22년 본인부담	'23년 수가	'23년 본인부담
1	74,850	14,970	78,250	15,650
2	69,450	13,890	72,600	14,520
3,4,5	64,040	12,808	66,950	13,390

2023년 변경사항

▶ 1·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

▶ 통합재가서비스 확산

* 요양 · 목욕 · 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

▶ 방문진료 ·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

▶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

*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: 2.5:1(현행) → 2.3:1('22.10월) → 2.1:1('25년)

▶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

*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(약 13만원 추가 인상)

▶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

* 루게릭 · 다발성 경화증 등(질병코드 기준 G12, G13, G35)을 추가로 포함

2023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한도액 및 이용요금,

시설서비스의 1일급여액, 장기요양보험료율, 서비스 개선 내용 등이 발표되었습니다.

▶ 2023년 장기요양험료율 0.91%

(2022년 대비 0.05% 인상, 2018년 이후 최저 수준)

▶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4.70%

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

(단위 : %)

급여 유형	평균	요양시설	공동생활가정	주야간보호	단기보호	방문요양	방문목욕	방문간호
인상률	4.70	4.54	4.61	4.54	4.56	4.92	4.55	4.23

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

(단위 : 원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2년	1,672,700	1,486,800	1,350,800	1,244,900	1,068,500	597,600
2023년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(증가액)	212,300	203,200	66,400	61,300	52,600	27,000